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70호,
제2208312호)에 대한 의견서**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70호(복기왕 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12호(송언석의원대표발의)]”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에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장기계속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성질상 수년간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에 다년도에 걸친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여 계약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 계약방식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속비계약과 달리 전체 공사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1차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차년도 이후 회계연도별 적정 예산 미확보, 설계변경, 토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증가하거나 차수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장기계속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8년 대법원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던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장기계속공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국회에서는 제20대국회 이후 장기계속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건설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도 건설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건설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다년차 공공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장기계속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70호(복기왕 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12호(송언석의원대표발의)]”의 조속한 심사 및 의결이 필요함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함.